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05회 제1차정례회 (2016. 6.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6. 9. (목)

나. 제 출 자 : 이동주 의원외 12명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6. 6. 9. (목)

4. 관련근거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개정이유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5급지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을 인하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기회를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6. 주요 개정내용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관 요금을 별표1의(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관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5급지 주차장에서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관요금은 3만원으로
인하 함. (안 제12조제3항)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② (생략) ③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관 요금은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관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u>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관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u> |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5급지 주차장에서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관요금은 3만원----- ----- ----- |

7.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5급지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관 요금을 인하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기회를 확대하여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2조 제3항의 단서 중
 - ▶ 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탄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다만, 5급지 주차장에서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 금번, 공영노외주차장중 5급지 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2009. 4. 22)에 따라 강북구외 10개 자치구가 서울시 조례를 준용 정비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음.
- 따라서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기회를 확대하여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 다만, 조례 개정 후 정기권 이용자와의 요금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및 노외주차장 연간 수입 감소 등은 세부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1. 타 자치구 조례현황

- 대상주차장 : 공영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제외)
- 대 상 자 :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
- 주요사항 : 월정기권(주·야)주차요금
- 조례 개정 : 서울시 조례 개정 (2009년 4월)

| |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제1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
|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4.22.> |

2. 서울시 자치구 조례 개정 현황

| 조례 개정 (11개구) | 조례 미개정 (14개구) |
|--|---|
|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중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성북구, 은평구 | 마포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서대문구, 중랑구, 종로구, 용산구, 강서구 성동구, 관악구, 광진구, 양천구 |

| |
|--|
| 타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9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등) |
| ③ 공영노외 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 5급지 월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개정 2009. 7.30) |

3. 마포구 노외(시설 포함)주차장 현황 (9개소 / 1,097면)

| 연번 | 주차장명 | 위 치 | 구 획 (면수) | 주차요금 (월정기권) | 개인택시·화물 정기권수(대) | 급 지 |
|----|--------|----------------------------|-------------|----------------|--------------------|-----|
| 1 | 양화진 | 토정로2 (합정동139-21외) | 133 | 5만원 | 3 | 5급지 |
| 2 | 망원1-2 | 포은로6길10 (망원1동403-2) | 150 | 5만원 | 16 | 5급지 |
| 3 | 서강대역환승 | 신수동 93-35호외3필지 | 98 | 5만원 | 13 | 4급지 |
| 4 | 망원동노외 | 월드컵로131(망원동 478-10) | 13 | 5만원 | 0 | 4급지 |
| 5 | 창천중교 | 백범로1길56 (노고산동33-1) | 280 | 8만원 | 5 | 3급지 |
| 6 | 상 암1 | 성암로197 (상암동1621외) | 141 | 10만원 | 4 | 3급지 |
| 7 | 도 화 | 도화길37 (도화동 557외) | 66 | 17만원 | 0 | 2급지 |
| 8 | 염 리 | 큰우물로61 (염리동174-3) | 135 | 17만원 | 0 | 2급지 |
| 9 | 신 촌 | 신촌로86외 (노고산동 49-55, 57-53) | 81 | 정기권 없음 | - | 1급지 |
| | | | 1,097면 | | 40대 | |

4. 조례개정 후 노외주차장 수입내역 예상 현황

(단위 : 대/원)

| 급지별 | 이용 대수 | 개 정 전 | | 개 정 후 | | 차 액 | 비 고 |
|-----|----------|--------|------------|--------|-----------|------------|--------------|
| | | 월정기요금 | 수입액(원) | 월정기요금 | 수입액(원) | | |
| 5급지 | 19 | 50,000 | 11,400,000 | 30,000 | 6,840,000 | △4,560,000 | 양화진 망원1-2 |

관계법령 및 근거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0.3.22.]

[별표 1] <개정 2015.9.2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 구분 | 노상주차장 | | | 노외주차장 | | |
|-----|---------------|---------|--------|---------------|---------------------------------|---------|
| | 1회주차 시 5분당 | 월 정기권 | | 1회주차 시 5분당 | 월 정기권 | |
| | | 주간 | 야간 | | 주간 | 야간 |
| 1급지 | 500 | - | - | 400 | 250,000 | 100,000 |
| 2급지 | 250 | 150,000 | 60,000 | 250 | 180,000 | 60,000 |
| 3급지 | 150 | 100,000 | 40,000 | 200 | 100,000 | 40,000 |
| 4급지 | 100 | 50,000 | 20,000 | 150 | 환승목적주차 시 40,000 기타 50,000 | 20,000 |
| 5급지 | 50 | 30,000 | 20,000 | 100 | 30,000 | 20,000 |

※ 5급지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권 요금
 -노상주차장 : 월 4만원
 -노외주차장 : 월 5만원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홍익대학교·서강대학교 주변 지역 : 신촌로·대흥로·강변북로·양화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

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급지부터 5급지까지 지역의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14.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1급지, 5급지 소재 주차장은 제외)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주차 당일의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주차 당일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19.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0.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단, 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 수강 시마다 2시간 이내 면제

나.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 정기권 50% 할인(단, 중복할인 불가)

21. 공무수행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2.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말한다.)